

현	장	보	고
---	---	---	---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

자연·문화 공간의 공유화를 위한 보전운동

서왕진

환경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1. 들어가는 글

요즘 세계 진보진영의 공통의 과제는 20세기 막바지에 본격화되어 미친 듯이 질주하는 자본의 세계화에 대한 응전으로 보인다. 눈부신 경제성장과 과학기술의 진보를 성취한 20세기는 다른 한편으로는 무분별한 개발과 생산으로 인한 전지구적 환경위기의 시대이자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계속 심화되어 가는 20대 80의 시대였다. 그리고 이러한 20세기적 문제가 세계화라는 자본의 운동을 통해 전지구적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올해 워싱턴에서 열렸던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 연차총회는 지난 연말 시애틀의 세계무역회의(WTO) 각료회의 때처럼 세계경제 체제에 대한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는 시위 행렬로 뒤덮였다. 주빌리 2000 등 종교단체, 지구의 친구들 등 환경단체, 미국의 AFL-CIO 산별노조, 학생 단체 등 수백 개 NGO의 수만 시위군중들은 회의기간 중에 세계 경제체제와 그 운용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였다.

시애틀 WTO회의나 워싱턴의 IMF/IBRD 연차총회에서 나타난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무한경쟁과 시장만능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적 세

계획에 맞선 지구촌 시민들의 항거였다. 시장을 이상적 사회 모형으로 삼고 시장의 원리를 사회의 주된 구성원리로 지향하는 사상인 신자유주의는 정보기술혁명과 자본의 국가 간 자유이동으로 범세계적 규범이 되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되지 않은 세계화는 일국적인 차원에서나 세계적인 차원에서 민중들의 생존기반을 무너뜨리고 지구환경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적 가치와 실천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주도해 나가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지금 세계 시민운동 앞에 주어져 있다.

한국의 20세기 역시 후반에 접어들며 시장의 논리가 압도하는 압축성장의 시기였다. 경제적 불평등의 구조화는 물론이고 개발 일변도의 토지이용으로 인한 국토의 황폐화 정도는 점입가경이다. 20세기 후반 10여 년 사이에 감소한 농경지와 산지면적은 약 3000km²에 이른다. 1350km²에 달하는 간척과 매립으로 대부분의 갯벌이 사라지고 해안생태계가 무너졌다. 전국의 주요 호수와 10대 하천은 II~III등급으로 떨어져 물공급이 위협받고 있다.

개발과 성장의 20세기말에 위협받는 환경현실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은 바로 지난해 여름을 뜨겁게 달군 그린벨트 논쟁이다. 그동안 정부가 중심이 되어 철용성처럼 유지되던 그린벨트 제도가 바로 그 정부에 의해 근본에서 무너지고 만 것이다. 토지를 불가침의 사유재산으로 여기고 재산증식의 최고 수단으로 여기는 주민들의 끈질긴 요구를 정부가 정치논리로 수용한 것이다. 지금까지 도시환경 보존의 마지막 보루로 여겼던 그린벨트가 무너지는 현실에서 시민환경운동 진영은 처절한 투쟁을 전개했다. 그러나 결과는 초지일관 해제일변도의 입장을 견지한 건교부의 방침대로 결정되고 말았다. 시민환경운동의 근본적 한계를 느끼게 하는 상황이었다. 사유재산에 대한 절대적 권리를 주장하는 주민과 정부가 한통속이 되면 시민환경운동은 그저 먼 산만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주어진 것이다.

2. 시민환경운동의 대안은 무엇인가

우리 환경운동은 지난 10년 간 비약적인 성장을 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언론을 중심으로 추진된 개인의 생활환경의식에 호소하는 캠페인이 주류였다고 볼 수 있다. 삼푸 안 쓰기, 쓰레기 분리수거, 한 집 한 등 쓰기 등과 같은 생활실천운동은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저변을 넓히는 데는 크게 기여했지만 환경문제에 대한 이념적이고 구조적인 인식과 실천프로그램으로 발전하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환경운동은 국토이용제도와 같은 국가 정책적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전업활동가들을 중심으로 국가를 상대로 한 대응만을 한 것이다.

그린벨트에 대한 대응방식이 바로 이러한 전형적 사례다. 그간 환경운동 진영은 신성불가침 영역처럼 제도가 유지되어온 그린벨트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보다는 기본 제도적 골격은 정부가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서 공익의 이름으로 정부에 의해 훼손되는 그린벨트 문제만을 이슈로 제기해왔다. 그러다 보니 막상 주민들과 정부가 합심해서 제도 자체를 흔들어대는 순간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시민적 동력을 조직하는데 큰 한계에 부딪히고 만 것이다. 우리 환경운동이 이러한 사안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안 마련과 국토 이용에 관한 이념적 설득력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환경문제 구조에 대한 근원적인 대응이 되는 이념 실천적인 운동 전망과 이의 대중적 확산을 이루어 내는 것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우리에게서 이념 실천적인 환경운동의 정립이 가장 긴요한 분야는 바로 토지이용분야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토지는 전통적으로 부의 축적 수단이 되어 왔다. 과거에는 생산의 공간이었던 토지가 개발과 압축성장의 시대에 들어서 부동산 투기에 의해 엄청난 불로소득을 얻게되는 대상이 되면서 너도나도 개발에 혈안이 되었다. 국민 대부분은 사실상 부동산 투기의 피해자였지만 한편으로는 투기로 인한 부의 축적을 부러워하는 공범자이기도 했다. 그 결과 토지 소유자의 개발권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으며 국가가 군사, 환경, 문화적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 강력한 민원에 부딪히기 일쑤였다. 이러한 경향은 권위주의 시대를 지나면서 더욱 폭발적으로 나타났으며 심지어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례들도 사유재산권의 철저 보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절대적 가치로 여겨지는 사유재산권 중심주의와 그 바탕

이 되는 시장경제의 논리는 기본적으로 욕망의 논리이다. 이 무한한 욕망의 논리가 다만 수요공급원리라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절될 따름인 것이다. 문제는 이 욕망이 끝이 없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인류는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생산력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키면서 마침내는 하나뿐인 지구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점이다. 우리의 국토는 토지 소유를 자유로운 개발의 권리로 여기고 마음껏 개발하는 소유자들에 의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문제가 너무 심화되면서 마침내는 우리 국토를 이용하고 관리하는 제도 정책을 근본에서 바꾸어야 한다는 여론들이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토지이용 관련 법과 제도들은 단순히 일부 전문가나 정부 당국자들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이미 그린벨트 문제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정부당국자들은 우리 국토에 대한 철저한 보전철학에 입각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의 정치상황이나 주민들의 강력한 민원에 의해 얼마든지 흔들리게 마련이다. 따라서 일반 국민들의 의식 속에 토지자원의 공적 성격에 대한 동의가 형성되어야 하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 실천행동이 이어져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시도가 바로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이다.

3. 새로운 대안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

1) 국민의 공유물이 된 자연자산과 문화유산

영국에서 처음 출발한 내셔널 트러스트의 정식명칭은 ‘자연이 아름답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를 보전하기 위한 국민신탁(THE NATIONAL TRUST for Places of Historic Interest or Natural Beauty)’이다. 1895년에 100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이 운동은 현재 25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영국 최대의 시민운동일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등 25개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세계적인 운동이다.

내셔널 트러스트는 약 27만 헥타르의 토지를 보유한 영국 최대의 사적 토

지소유자이다. 영국 토지의 1.5%를 내셔널 트러스트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직접적인 소유뿐만 아니라 법적 규정력을 지닌 서약을 통해 보전을 약속한 토지도 상당하다. 또한 1965년 넵툼 캠페인을 통해 본격화된 해안선 매입운동의 결과로 약 600마일(965km)에 달하는 해안선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는 영국 전체 해안선의 18%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이다. 이 밖에도 역사적인 건물 165채, 성 19채, 정원 160곳, 교회 및 성당 49곳, 선사 및 로마시대 유적 9곳, 경관공원 73곳, 건물 2,792동을 내셔널 트러스트가 보유하고 있다(표 1 참조). 영국 어디를 가든 내셔널 트러스트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숲, 정원, 강, 고택, 유적, 선물가게, 민박시설 등을 쉽게 볼 수 있는 것이다.

<표 1> 영국 내셔널 트러스트의 자산 보유 현황 (1998년)

구 분	보유 현황
역사적인 건물(historic houses)	165 채
성(castles)	19 채
정원(gardens)	160 곳
전통산업시설(mills/industrial archeology)	47 곳
교회 및 성당	49 곳
선사 및 로마시대 유적	9 곳
경관공원(landscape parks)	73 곳
보전토지	272,659 헥타르
보전해안선	600 마일
소유건물	2,792 동

이러한 객관적 현실은 ‘국민들로부터 환경·경관·문화재 등을 신탁 받아 이를 시민 주도적으로 관리하면서 영구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이 궁극적으로 토지 등 환경자원의 탈사적(脫私的) 소유, 즉 ‘사회적 자본화(social capital)’를 지향하는 운동임을 보여준다. 환경자원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소유되거나 시장가격의 논리에 따라 개발·사용되는 것을 넘어서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 이는 토지 등 환경자원을 사적으로 소유하지 못한 다수 국민에게 이를 공적으로 이용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자원배분에 있어서의 정의를 실현하는 운동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은 토지 및 환경에 관한 새로운 사상 및 이념을 토지의 사

적 논리가 지배적인 현실에서 구현하는 실천적인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기존 생활의식개혁운동이나 환경훼손적 개발에 대한 저항운동을 넘어서는 새로운 시도라 할 것이다.

2) 경관의 철저한 관리와 영구보전

내셔널 트러스트의 가장 큰 장점은 보전가치가 있지만 사적 소유 하에 있는 토지, 경관, 시설들을 ‘국민 트러스트’란 형식으로 전환시켜 ‘시민주도적’으로 이를 영구히 보전·관리하는 방식에 있다. 한번 신탁된 자연자산 및 문화유산은 개발의 위협으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나게 된다.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은 영국의 회사법(Company Act)에 근거해 비영리법인으로 시작되었지만 운동의 국민적 성격을 담보하기 위해 1907년 의회입법으로 내셔널 트러스트법(National Trust Act)이 제정되면서 독자적인 법체계를 갖게 된다. 이 법에 의해 내셔널 트러스트에 부여된 가장 중요한 권한은 ‘토지를 양도 불가능하게 지키는 것’이다. 토지가 내셔널 트러스트에 신탁되면 그 토지는 의회의 특별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내셔널 트러스트의 의사에 반하여 매도되거나 담보 설정 또는 강제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법적 조치를 통해 영구성을 보장받은 내셔널 트러스트 자산들은 원래의 경관과 역사적 전통, 그리고 야생 동식물 등의 보전을 위해 많은 노력이 투여된다. 자연보전 전문가들이 각 지역에서 내셔널 트러스트 자산에 대한 조사 및 관리 활동을 추진하여 야생동식물의 현황 파악과 보호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해안 관리, 생물다양성 보호, 염습지 보호를 위한 조사와 정책 개발 내용들을 보면 정부에서 수행하는 환경정책에 전혀 뒤지지 않는 수준이다. 한편 원래의 경관과 역사적 전통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도 매우 적극적으로 펼쳐진다. 18세기 정원인 스타위헤드(Stourhead)의 페라고니움(Pelagonium) 온실이 한 예이다. 이 정원의 관리자들은 1820년에 스타위헤드를 소유했던 은행가가 남아프리카에서 페라고니움(Pelagonium)이라는 화초를 들여와 정원을 꾸몄다는 기록을 바탕으로 이를 복원하기 위해 특별 모금활동을 벌여 정원 한편에 온실을 만들어 놓았다.

3)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한 재정의 자립과 정부로부터의 독립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자산 헌납과 기부 및 자원봉사 등을 통해 보존가치가 있는 땅, 경관, 시설을 취득하고 이를 시민 주도적으로 보존하는 데 있다. 시민의 자원성(自願性)을 바탕으로 하는 이 같은 운동방식은 국가로부터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고히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보존을 위해 시민들이 자산의 일부를 기부하고 기증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서 보존에 대한 주의주장을 넘어 자의식을 가지고 직접 실천하는 매우 중요한 운동적 의미를 띤다.

내셔널 트러스트의 수입은 주로 회원 회비, 유산기증, 투자 및 임대 수익 등이다. 특히 1937년 법개정을 통해 자선단체(charity)로 인정되면서 토지나 건물 등 매입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회원제를 통한 모금(회비납부)을 주요한 신탁형성 수단으로 운용하고 있다. 1997~1998 회계년도에 회비로 거둔 액수가 51,573,000파운드(약 천억 원)으로 내셔널 트러스트 전체 수입의 30%에 달한다. 또한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 초기부터 꾸준히 지속되어온 사회 명망가를 포함한 시민들의 유산기증은 여전히 자산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모금 및 기부를 독려하는 운동에는 사회 명망가나 저명인사(예, 수상이나 유명작가)들이 직접 나서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 외에도 상업적 활동을 통해 재정을 마련하는 내셔널 트러스트 엔터프라이스가 있다. 1973년 시작된 이 사업은 자체 상점과 식당, 찻집, 그리고 별장 운영 등을 통해 수입을 올리는데 전액 내셔널 트러스트 사업에 환원된다. 이처럼 다양하게 마련된 재정을 바탕으로 보존해야 할 토지를 직접 매입하기도 하고 확보된 자산을 운용, 관리하는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다(<표 2> 참조).

이러한 재정자립 구조는 내셔널 트러스트가 정부로부터 완벽한 독립성을 유지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물론 내셔널 트러스트의 활동은 토지소유권의 측면에서 상당한 이점을 주는 의회법에 의해 통제되고 있지만 이는 국민적 자산의 영구 보존이라는 목적을 관철하기 위한 장치일 뿐 국가로부터 재정, 운영에 있어 독립적인 것이다. 내셔널 트러스트는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필요하면 정부를 비판할 수 있으며 정부정책의 변화에 따라 수입의 급격한 감소에 직면하거나 정부의 지출제한에 구속받지 않는 것이다.

<표 2> 영국 내셔널 트러스트의 재정구조(1997~1998)

< 수 입 >

구 분	비 율
회원 회비(membership income)	51,573,000파운드
유산기증(legacies)	30,734,000파운드
재정보조금(grants and contributions)	15,224,000파운드
자선 및 기부 (appeals and gifts)	7,269,000파운드
투자수익(investment income)	24,254,000파운드
내셔널 트러스트 사업(enterprises)	11,621,000파운드
자산운용수입(direct property income)	29,664,000파운드
대여판매료(lease sales)	4,435,000파운드
총액(Total Incoming Resources)	174,774,000파운드

< 지 출 >

구 분	비 율
취득(aquisition)	6,886,000파운드
자산 운용비(routine property expenditure)	81,568,000파운드
자본투자사업(capital projects)	33,896,000파운드
회원관리, 홍보(membership, publicity)	15,164,000파운드
기타 운영비(other expenditure)	3,233,000파운드
총액(Total Resources Expended)	140,747,000파운드

4) 신탁 자산의 공공적 활용

내셔널 트러스트는 신탁 받은 환경 및 문화자산을 단순히 보전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시설이나 장소를 관람하고 활용케 하며, 또 이를 이용해 시민들을 교육시키거나 기업적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그 가치를 극대화하는 활동들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1960년대부터 내셔널 트러스트가 소유한 자산을 정태적으로만 보유하고 있을 게 아니라 거

기에 일정한 행동을 가하고 그에 참가함으로써 환경과 인간의 관계를 보다 긴밀히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내셔널 트러스트가 소유한 공원, 성, 정원, 가옥들은 일반시민 및 회원들에게 개방하고 관람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개방은 신탁된 환경·문화자산이 국민적 공유물임을 확인하게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시민들이 환경문화자산의 가치를 재인식하도록 하는데 기여한다. 1997년에 내셔널 트러스트가 소유한 전국 주요 경관지, 건물, 장소 등을 이용한 사람은 11,624,587명이나 되었다. 한편 시설을 친환경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에는 투숙, 관광, 시설대여 등도 포함된다. 이를테면 내셔널 트러스트가 소유한 대저택, 성, 전통가옥, 공원 등을 호텔, 관광, 시설대여 사업 등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현재 해외 주요 명승 관광지와 연계한 국제 관광사업도 하고 있다.

5. 영국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의 발생 배경

이처럼 대안적인 환경문화운동이 형성된 배경이 도대체 무엇일까? 영국에서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이 시작된 19세기말은 급격한 산업화가 진행되던 시대였던 만큼 그에 따른 정주환경 파괴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하면서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다양한 형태의 자발적인 시민 실천운동(예, 전원도시운동, 농촌경관보존운동 등)이 출현하였다. 그 중의 하나가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인 것이다. 이 운동은 빈민주거지 재개발운동을 펼쳤던 옥타비아 힐(Octavia Hill), 공유지보전협회(The Commons Preservation Society)의 명예 변호사 로버트 헌터(Robert Hunter), 위스워드의 자연보전관을 신봉했던 성공회 신부 하드위크 론스리(Hardwicke Rawnsely)에 의해 시작되었다. 무분별한 개발과 산업화가 초래한 문제들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졌던 이들은 당시의 개혁적인 정치가, 기독교 사회주의자, 비판적인 문학과 예술가들과 교류를 통해 보전과 공유에 관한 이념적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것은 철학자이자 비평가였으며 사회개혁가였던 존

루스킨(John Ruskin)의 이상사회에 대한 급진적 이념이었다. 루스킨의 사회 개혁 사상을 공유한 이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실천운동을 하다가 1895년에 그들의 이상을 보다 체계적으로 실현할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을 정식으로 결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은 사회 개혁적 실천사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내셔널 트러스트는 자연유산을 보전하고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직되었던 것이다. 1937년에 찰스 트레블안 경(Sir Charles Trevelyan)이 그의 전 자산을 내셔널 트러스트에 기증하기로 결정하면서 ‘사회주의자로서 나는 소유에 대한 감상에서 사로잡혀 있지 않다. 내가 아끼고 있는 이 장소가 이 나라의 모든 사람을 위한 것으로 영원히 간직될 수 있다는 만족으로 나는 이렇게 한다’고 선언하였던 것은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의 지향성을 잘 반영해주고 있다.

한편 1895년에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이 출범하게 되는 보다 직접적인 배경에는 이 운동을 주도했던 힐 여사와 변호사 헌터가 20여 년 전에 경험했던 쓰라린 좌절이 있었다. 그것은 1874년 런던 북쪽에 위치한 스위스 카티지 필드(Swiss Cottage Fields)란 주거지를 주택개발로부터 보전하려는 운동을 백방으로 펼쳤지만 결국 이를 성사시키지 못했던 경험이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이들은 훼손될 처지에 있는 역사적, 경관적 장소나 건물을 ‘영구히 보전(permanent preservation)’하기 위해서 그 자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조직 건설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은 자연 및 문화 유산에 대한 사회적 공유 사상과 같은 개혁적 실천사상과 구체적인 보전운동에서 얻은 뿌리깊은 운동이다.

6. 우리나라의 내셔널 트러스트운동

우리나라 내셔널 트러스트운동의 첫 번째 실험을 꼽으라면 아마도 무등산 내셔널 트러스트운동일 것이다. 무등산은 광주에 상징으로 시민들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개발의 손길은 예외가 아니어서 광주광역시와 담양, 화순 등 인접 자치단체나 기업들이 온천, 음식숙박업소

등을 개발하면서 무등산의 자연생태계가 심각하게 위협받기에 이르렀다. 이에 맞서 1989년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가 창립되었고 이 조직이 중심이 되어 1994년부터 무등산 공유화 기금 조성운동을 펼쳐왔다. 무등산 공유화 기금은 1999년 12월 현재 2천3백만 원 정도가 적립되어 있다. 비록 그 규모는 크지 않지만 무등산 공유화 운동에 대한 시민적 인식과 공감대가 점점 확산되고 있다. 무등산 공유화 운동은 전국적인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의 창립과 함께 ‘무등산 트러스트 운동’이란 명칭으로 분명한 자리 매김을 하면서 더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보다 전형적인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의 전개는 대전 한남대 부근의 오정골 선교사촌을 지키기 위한 운동인 ‘오정골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의 사례이다. 6.25사변 직후 선교 활동을 하러 대전에 온 선교사들에 의해 건축된 이 주택촌은 한식과 양식이 조화를 이룬 건축물과 주변의 수려한 자연경관이 어우러져 그 역사적 의미와 함께 높은 가치를 부여받는 곳이다. 그런데 이곳이 개인 건설업자에 의해 원룸 아파트로 바뀌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1999년 1월 목원대 김정동 교수, 대전의제21 추진협의회 박용남 사무처장 등이 중심이 된 소위 ‘오시모 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이 운동은 7개월 간의 노력 끝에 3천1백21평의 수십억 원대의 땅을 한남대가 구입해서 영구보전하기로 함으로써 결실을 맺었다. 이밖에도 녹색연합이 1999년 5월 강원도 태백지역에서 한국전력 변전소 건설 예정지 한가운데 1천 평을 매입함으로써 변전소 건설에 제동을 거는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이러한 다양한 실험들을 바탕으로 마침내 2000년 1월 전국적인 차원에서 내셔널 트러스트운동이 정식 선포되었다. 1998년부터 그린벨트 문제를 대응하면서 토지 분야의 대안적 운동으로서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을 연구해왔던 환경정의시민연대(전신 경실련 환경개발센터)를 중심으로 토지, 생태,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기업인들이 힘을 모아 사단법인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을 창립하였다. 내셔널 트러스트운동은 지역차원에서 전개되는 이 운동들을 네트워크하여 상호 협력함으로써 힘을 강화하여 국민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이 운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신탁자산의 영구성을 보장할 내셔널 트러스트법의 제정에 힘을 쏟을 것이다.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은 보전지역을 지정함에 있어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리되지 않는 지역 및 유적, 제도적으로 내셔널 트러스트 소유지역으로 이전될 수 있는 지역, 훼손 위험에 처해 있는 곳, 지역주민의 참여도가 높은 지역 등이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의 후보지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에 의해 우선적으로 강화 갯벌, 신두리 해안사구, 무등산, 천리포 수목원, 시흥 갯벌, 강화 매화마름 군락지, 강동구 둔촌동 내륙습지, 제주 선홍곶 등 8개 사이트를 후보지로 지정했다. 이러한 후보지 선정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위로부터의 접근이라고 한다면 이후에는 일반 시민들이 직접 보전지역을 선정하는 아래로부터의 운동이 전개될 예정이다. 한편 보전지역의 매입 또는 임차와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클럽 등 모금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7. 맺음말

최근의 그린벨트 해제조치나 국립공원, 접경지역 등에 대한 끊임없는 개발 압력에서 보여지듯 우리 현실은 보전해야 할 자연 자산의 가치가 개발 이익이라는 시장가치에 의해 일방적으로 재단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에 대응하는 환경운동의 수준은 그 이념적 설득력과 시민의 자발적 실천을 유도하는 능력 두 가지 모두 매우 미약할 뿐만 아니라 통합되어 있지 못하다. 자연 자산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저항은 있으나 이를 극복할 만한 대안적 운동이 부재한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에서 시민들의 자발적 모금과 자산헌납을 통해 환경보전을 도모하는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은 사회적 이념성과 개인적 차원의 실천조건을 매개하는 운동양식이라는 점에서 하나의 대안적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린벨트가 무너지는 과정을 겪으면서 뜻있는 많은 사람들은 국토의 사유화를 극복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 접근이 불가피함을 뼈저리게 느꼈다. 또한 이러한 토지공유사상과 같은 이념적 지향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이해와 참여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도 분명히 인식하였다. 이러한 자각에 기반한 내셔널 트러스트 운

동의 시도는 시민운동에 새로운 실험이 될 것이다. 100년 전 10파운드를 들여 매입한 영국 내셔널 트러스트 최초의 건물이자 이 운동의 발상지라 할 수 있는 클러지 하우스(Clergy House)에는 옥타비아 힐, 로버트 헌터, 그리고 하드워 론슬리 3인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다. 이들 역시 산업화와 개발이라는 거대한 힘 앞에 무수히 좌절하면서 오로지 자연 및 문화유산의 공유화라는 자신들의 신념을 관철하기 위해 애쓴 결과 오늘의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을 일구어 냈다. 우리에게도 송산(松山)이나 어장(漁場) 등을 동네 주민들의 공동 재산으로 규정하고 처분하거나 나누어 가질 수 없도록 했던 공유재산이라는 전통이 있다. 그리고 매우 역동적인 시민운동이 있다. 창조적이고 현실적인 한국적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을 만들어 나갈 가능성이 분명 우리에게도 있을 것이다.

서왕진 wjseo@ecojustice.or.kr

참고문헌

- 김병완, 2000, 「무등산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 《환경과 조경》.
- 김정동, 2000, 「땅과 건물을 귀하게 알아야 오시모운동 보고서」, 《환경과 조경》.
- 전재경, 1999, 「자연신탁을 위한 법적 접근」,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창립 1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 조명래, 1999, 「National Trust 운동의 이해와 한국사회의 적용」, 『환경정의시민연대 주관 ‘National Trust 운동 소개 및 한국사회적용을 위한 워크샵’ 자료집』.
- 조명래, 1999, 『새로운 시민운동으로서 National Trust 운동의 이해와 활용』.
- John Harvey, 「영국의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 전개과정과 성과」, 『무등산 보호단체협의회 창립 1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 The National Trust, 1999, National Trust Head Office 발간 자료.